2027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공고

2026. 11. 24.

신청사들은 2027년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공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공고에 제시한 증빙자료 이외의 자료 제출 및 붙임자료 이외의 양식에 작성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Local Press Commission

목 차

Ⅰ. 공고 개요 ····· 1
1. 공고 목적 ····· 1
2. 지원 대상 ····· 1
3. 선정 근거 ····· 1
4. 향후 일정 ····· 2

Ⅱ. 심사 기준과 방법 ····· 3
1. 심사 기준 ····· 3
1.1 심사의 기본 방향 ····· 3
1.2 심사 기준 ····· 4
2. 심사 방법 ····· 5
2.1 기준 지표 ····· 6
2.2 배점평가 지표 ····· 6

Ⅲ. 세부항목별 심사 지표 ····· 8
1. 심사 항목 일람표 ····· 8
2. 세부 심사 항목 ····· 9
2.1 필수 요건 ····· 9
2.2 우선 지원 기준 ····· 12
2.3 배점평가 기준 ····· 15

Ⅳ. 신청서 작성방법 ····· 29
1. 신청요령 ····· 29
1.1 용어의 정의 ····· 29
1.2 신청서 제출방법 ····· 29
1.3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공고 관련 문의 ····· 30
2. 신청인의 의무 ····· 30

Ⅴ. 자주 묻는 질문 ····· 31

Ⅰ. 공고 개요

1. 공고 목적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 제1조(목적)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2027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 우선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기금의 지원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항, 평가에 필요한 자료, 지역신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공고함.

2. 지원 대상

○ 법 제2조(정의)에 따라 '지역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신문으로서 일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또는 시 · 군 · 자치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함

○ 법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법 제16조 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6조(우선 지원 기준)의 요건을 갖춘 지역신문에 대하여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3. 선정 근거

○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법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시행령 제14조(기금의 지원 등)·제15조(제출서류)·제16조(우선 지원 기준) 등에 의거, 평가한 결과로 선정된 지역신문에 기금을 우선 지원함.

○ 위원회는 법 제9조(위원회의 직무 등)에 따라 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수 요건'(3항목), '우선 지원 기준'(3항목), '우선지원대상 지역신문의 선정을 위한 배점평가 기준'(11항목) 등 다음의 기준을 제시함

► 필수 요건

① 1년 이상 정상발행(법 제16조제1항제1호)

② 광고비중 50% 이하(법 제16조제1항제2호)

③ 지역신문 운영관련 법 위반 여부(법 제16조제1항제4호)

► 우선 지원 기준

① 편집자율권 보장(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② 해당 법 위반 여부(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③ 4대보험 완납(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 우선지원대상 지역신문의 선정을 위한 배점평가 기준(시행령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① 소유 지분 분산정도

② 경영건전성 정도

③ 위원회 주관 조사·연구 및 연수사업 등 참여도

④ 제작, 취재, 판매, 광고 등에 관한 윤리자율강령 준수도

⑤ 홍보성 계도지 여부

⑥ 중장기 발전계획 및 지원금 사용계획

⑦ 조세체납 여부

⑧ 종사자 임금체불 정도

⑨ 총 게재 기사 중 지역 관련 기사의 비율

⑩ 인사관리·기자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일간신문) /
총 게재 기사 중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의 비율(주간신문)

⑪ 교육·훈련제도의 합리적 운영(일간신문) / 발행지속기간(주간신문)

4. 향후 일정

○ 지원기준 공고 : 2026년 11월 24일(화)

○ 온라인 설명회 : 2026년 11월 27일(금) 오전 9시 30분

○ 서류 접수(온라인) : 2026년 11월 24일(화) ~ 12월 15일(화) 16시

○ 서류 보완(온라인) : 2026년 12월 21일(월) ~ 12월 24일(목) 16시

○ 심사 : 2027년 1월 중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2027년 2월 중 (예정)

○ 2027년도 사업설명회 (우선지원대상 선정사 대상) : 2027년 2월 중 (예정)

※ 위원회 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www.cln.or.kr)를 참고할 것.

Ⅱ. 심사 기준과 방법

1. 심사 기준

1.1 심사의 기본 방향

○ **2027년도 우선지원대상 선정 심사의 주안점**

1.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한 심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에 기반하여 충실하게 심사하고자 함
2. 지역신문의 실정에 맞춘 평가의 목적과 기준을 제시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높임
3. 경영건전성 관련 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저널리즘 역량 및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노력 등 신청사의 질적 운영의 수준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함.

구분	평 가 항 목	2026년		2027년	
		일간지	주간지	일간지	주간지
공통 조건	7. 경영건전성 정도	170	170	120	120
	8. 위원회 연수사업, 컨퍼런스 등 참여도	140	120	160	120
	14. 총 게재 기사 중 지역 관련 기사의 비율	30	10	60	60

4.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시 일정 평가 점수 이상을 획득한 신문사 중, 지역(권역)을 고려하여 우선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음

· 지역(권역)단위 선정방식 안내

- 일간신문의 경우 일정 평가 점수 이상을 획득한 신문사 중, 다음 9개 지역(권역)을 고려하여 우선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음

· 권역1 : 인천·경기권 · 권역2 : 강원권 · 권역3 : 충북권
· 권역4 : 대전·세종·충남권 · 권역5 : 전북권 · 권역6 : 광주·전남권
· 권역7 : 대구·경북권 · 권역8 : 부산·울산·경남권 · 권역9 : 제주권

- 주간신문의 경우 일정 평가 점수 이상을 획득한 신문사 중, 전국의 시·군·구 단위를 고려하여 우선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음

○ **심사 결과의 활용**

- 심사 결과는 당해 연도 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신문사별 지원 규모 및 집행의 타당성 지표로 활용할 예정임

1.2 심사 기준

○ **필수 요건**(법 제16조제1항)

- 법 제16조(기금의 지원 등)제1항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음
  ① 지원 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②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경우

○ **우선 지원 기준**(법 제16조제3항, 시행령 제16조)

- 법 제16조(기금의 지원 등)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신문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지역신문에 대하여 기금을 우선 지원함.
  ①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편집에 관한 규약을 제정·시행하는 등 편집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을 것
  ② 기금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 밖의 임원이 시행령 제1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③ 기금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동안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미납액이 없을 것

○ **우선지원대상 지역신문의 선정을 위한 배점평가 기준**(시행령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 필수 요건 및 우선 지원 기준을 충족한 지역신문 중 시행령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기준에 따라 '일간신문·주간신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 '일간신문에 추가로 적용되는 기준', '주간신문에 추가로 적용되는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하여 우선지원대상을 선정함

- 일간신문·주간신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
  ①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방송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자를 말한다)의 주식소유 비율의 정도
  ② 매출 규모, 부채 등 경영건전성 정도
  ③ 위원회의 조사·연구 및 연수사업에의 참여 정도
  ④ 신문의 제작·취재·판매·광고 등에 관한 윤리강령 등 자율강령의 준수 정도
  ⑤ 지방자치단체가 홍보를 목적으로 지역신문을 구매하여 주민에게 배포하는 행위에 응하여

지역신문을 판매하는지 여부

⑥ 시행령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장기 발전계획 및 지원금 사용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및 효과성 등

⑦ 조세의 체납 여부

⑧ 종사자에 대한 임금체불의 정도

⑨ 총 게재 기사 중 지역 관련 기사의 비율

- 일간신문에 추가로 적용되는 기준

① 인사관리 및 기자[주재기자(駐在記者)를 포함. 이하 같음] 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의 정도

② 기자에 대한 재교육 등 교육·훈련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정도

③ 편집 지면 제작과 관련한 기자들의 의견 수렴 및 반영 정도

- 주간신문에 추가로 적용되는 기준

① 총 게재 기사 중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의 비율

② 신문발행의 지속기간

2. 심사 방법

○ 심사 지표는 '필수 요건'과 '우선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기준 지표'와, '우선지원대상 지역신문의 선정을 위한 배점평가 기준'에 근거한 '배점평가 지표' 등으로 구성함

- 심사 항목은 평가의 목표와 기준에 부합하도록 구성하며, 각 심사 지표별 정해진 기준에 의거해 등급을 부여해 평가함

- 질문의 요지에 합당한 정량화한 수치를 제시하거나 최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하며, 답변 내용에 따라 평가를 차등할 수 있음

○ '배점평가 지표'에 대한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 복합(정량+정성) 평가에 관한 심사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정량 평가는 신청사가 제출한 신청서 및 붙임자료, 위원회 내부 자료, 관계기관 협조 자료 등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 있고, 수치만으로도 평가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는 경우에 활용함

- 정성 평가는 계량화할 수 없는 실적을 평가할 경우 신청사가 제출한 신청서 및 붙임자료 등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부여함

- 복합(정량+정성) 평가는 신청사가 제출한 신청서 및 붙임자료 상의 구체적인 수치와 정량화할 수 없는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부여함

2.1 기준 지표

○ ‘기준 지표’는 필수 요건과 우선 지원 기준에 해당하며, 기금을 우선 지원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임

- ‘필수 요건’에 대한 기준 지표는 ‘1. 1년 이상 정상발행’, ‘2. 전체 지면 대비 광고비중 50% 이하’, ‘3-1.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한 법 위반 여부’임

- ‘우선 지원 기준’에 대한 기준 지표는 ‘3-2.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당해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 밖의 임원”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에서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편집자율권 보장’, ‘5. 4대보험의 완납’임

구분		평가항목
기준 지표	필수 요건	1. 1년 이상 정상발행 2. 전체지면 대비 광고비중 50% 이하 3-1.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한 법 위반 여부
	우선 지원 기준	3-2.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 밖의 임원”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에서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편집자율권 보장 5. 4대보험의 완납

2.2 배점평가 지표

○ 우선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배점평가 지표’는 일간신문과 주간신문의 공통으로 적용되는 평가 항목과 일간신문에 추가로 적용되는 평가 항목, 주간신문에 추가로 적용되는 평가 항목으로 구분됨

- 공통 평가 항목은 ‘6. 소유지분 분산정도’, ‘7. 경영건전성 정도’, ‘8. 위원회 주관 조사·연구, 연수사업 등 참여도’, ‘9. 제작·취재·판매·광고 등 관련 윤리자율강령 준수도’, ‘10. 홍보성 계도지 여부’, ‘11. 중장기 발전계획 및 지원금 사용계획’, ‘12. 조세체납 여부’, ‘13. 종사자 임금체불 정도’, ‘14. 총 게재 기사 중 지역 관련 기사 비율’임

- 일간신문에 추가로 적용되는 평가 항목은 ‘8-3. 교육훈련제도의 합리적 운영’, ‘9-5. 편집 지면 제작에서의 기자 의견 수렴’, ‘일-15. 인사관리 및 기자채용 투명성ㆍ공정성’임

- 주간신문에 추가로 적용되는 평가 항목은 ‘주-15. 총 게재 기사 중 자체 생산 기사 비율’, ‘주-16. 발행 지속기간’임

○ ‘배점평가 지표’ 중, ‘9. 제작・취재・판매・광고 등 관련 윤리자율강령 준수도’와 ‘11. 중장기 발전계획 및 지원금 사용계획’은 복합(정량+정성) 평가가 적용되며, 그 외 나머지 평가 항목은 정량 평가로 진행됨

구분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평가 지표	공통 조건	6. 소유지분 분산정도 7. 경영건전성 정도 8. 위원회 주관 조사・연구, 연수사업 등 참여도 10. 홍보성 계도지 여부 12. 조세체납 여부 13. 종사자 임금체불정도 14. 총 게재 기사 중 지역 관련 기사 비율	정량 평가
		9. 제작・취재・판매・광고 등 관련 윤리자율강령 준수도	정량+정성 평가
		11. 중장기 발전계획 및 지원금 사용계획	정량+정성 평가
	일간지 조건	일-8-3. 교육훈련제도의 합리적 운영 일-9-5. 편집 지면 제작에서의 기자 의견 수렴 일-15. 인사관리, 기자채용 투명성, 공정성	정량 평가
	주간지 조건	주-15. 총 게재 기사 중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의 비율 주-16. 발행지속 기간	정량 평가

Ⅲ. 세부항목별 심사 지표

1. 심사 항목 일람표

※ 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필수 요건 및 우선 지원 기준, 별표의 배점평가 기준을 심사 항목으로 구성함

1.1 기준 지표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방법
		일간지	주간지	
필수 요건	1. 1년 이상 정상발행	배점 없음	배점 없음	적합 여부 확인
	2. 광고비중 50% 이하			
	3-1.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한 법 위반 여부			
우선 지원 기준	3-2. 해당 법 위반 여부	배점 없음	배점 없음	적합 여부 확인
	4. 편집자율권 보장			
	5. 4대보험의 완납			

1.2 배점평가 지표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방법
		일간지	주간지	
공통 조건	6. 소유지분 분산 정도	30	30	정량
	7. 경영건전성 정도	120	120	정량
	8. 위원회 주관 조사·연구, 연수사업 등 참여도	160	120	정량
	9. 제작·취재·판매·광고 등 관련 윤리자율강령 준수도	210	190	정량+정성
	10. 홍보성 계도지 여부	10	10	정량
	11. 중장기 발전계획 및 지원금 사용계획	180	180	정량+정성
	12. 조세체납 여부	50	50	정량
	13. 종사자 임금체불정도	120	140	정량
	14. 총 게재 기사 중 지역 관련 기사 비율	60	60	정량
일간지 조건	일-15. 인사관리 및 기자채용 투명성, 공정성	60	-	정량
주간지 조건	주-15. 총 게재 기사 중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 비율	-	60	정량
	주-16. 발행지속 기간	-	40	정량
최종 배점		1,000	1,000	

2. 세부 심사 항목

2.1 필수 요건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6조(기금의 지원 등)에 따른 조건 평가임

○ 이 기준은 신청인이 지원신청 당시 기본적인 요건으로 갖춰야만 함

구 분	지표
1. 1년 이상 정상 발행	기준
2.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50% 이하	
3-1.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①「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신문을 발행한 행위 나.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다. 제22조제1항·제2항 또는 제23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신문을 발행한 행위 라.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행위	
②「근로기준법」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행위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를 위반한 행위	
③「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또는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을 위반한 행위	
④「형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제1항 및 제284조의 죄만 해당한다), 제286조(미수범)(제283조제1항, 제284조 및 제285조의 죄만 해당한다), 제347조(사기), 제349조(부당이득), 제350조(공갈), 제351조(상습범)(제347조·제349조 및 제350조의 죄만 해당한다), 제352조(미수범)(제347조·제350조 및 제351조의 죄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7조(배임수증재), 제359조(미수범)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⑤「변호사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 **「변호사법」** 제109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	
⑥「직업안정법」을 위반한 행위 **「직업안정법」** 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행위	

[공통] 1. 지원 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 '정상적으로 발행한 신문'이라 함은 임의로 휴간한 적이 없는 경우임
- 정상발행 여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답변 내용, 증빙자료, 붙임자료**를 근거로 판단하며, 위원회가 연중 실시한 지역신문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통해 확인한 후 평가에 반영함. 따라서 다음 2개의 증빙자료 및 붙임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

① 신청사는 **신문사의 '정기간행물등록증'을 제출할 것**

※신문사의 정기간행물등록증이란 정해진 제호와 주기로 신문을 발행하려는 자가 관할 관청에 등록을 완료한 후 발급받는 공식 증명서를 의미하며 '[공통] 1.' 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 '잡지 정기간행물등록증' 등 이와 무관한 증빙서류 제출 시 불인정함

② **2025년 11월 24일 이후 첫 발행신문의 발행호수가 나온 지면신문 PDF와 2026년 11월 24일(2027 우선지원대상사 공모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발행신문의 발행호수가 나온 지면신문 PDF를 제출할 것**. 이때 '이전', '이후'는 기준이 되는 때를 포함한 일자를 의미함. 이와 관련하여 지면신문 PDF는 반드시 지면 내용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지면 확인이 어려울 경우 불인정함

- PDF 파일이 없는 신문사의 경우 해당 기간의 신문을 우편 제출할 것

○ **세부 평가표**

평 가 항 목	세 부 내 용
1. 1년 이상 정상발행	1. 기준일(우선지원대상사 공모 공고일) 1년 이전부터 정상적으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까?

[공통] 2.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 기준일(2027 우선지원대상사 공모 공고일) 1년 이전부터 기준일까지 평균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50% 이하인 신문사를 대상으로 함
- 전체 지면 대비 광고비중은 신청사가 제출한 답변 내용과 위원회가 연중 실시한 지역신문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통해 확인한 후 평가에 반영함. 따라서 다음 2개의 증빙자료 및 붙임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

① 일간지는 2026년 3월 둘째 주 발행신문 PDF 파일, 주간지는 2026년 3월 한 달 발행신문 PDF 파일을 같이 제출해야 함. 해당 기간에 휴간이 있을 경우 휴간 횟수만큼 일간지는 2026년 3월 셋째 주, 주간지는 2026년 2월 한 달 기간에 있는 발행신문 PDF를 제출할 것

② 붙임자료 작성양식 **'[일/주간1] 광고비율계산내역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할 것

- PDF 파일이 없는 신문사의 경우 해당 기간의 신문을 우편 제출할 것
- 만약 해당 기간의 광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일간지는 2026년 3월 셋째 주, 주간지는 2026년 2월 한 달 발행분에 대한 광고비율을 추가 계산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함. 다만, 이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별도 첨부(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소명자료가 없을 시 불인정함

○ **세부 평가표**

평 가 항 목	세 부 내 용
2. 광고비중 50% 이하	2. 기준일(우선지원대상사 공모 공고일) 1년 이전부터 기준일까지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50%를 초과하지 않습니까?

[공통] 3-1.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지배주주'라 함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지배주주 본인과 그의 특수 관계인을 포함한 것을 의미함
- 대상자의 범위는 지원신청 당시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임
- 신청사가 제출한 임원 등 명단에 대한 범법사실 확인 후 신청사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판단함

○ **세부 평가표**

평 가 항 목	세 부 내 용
3-1.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한 법 위반 여부	3-1. 기준일(우선지원대상사 공모 공고일) 1년 이전부터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2.2 우선 지원 기준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우선 지원 기준)에 따른 조건 평가임

○ '필수 요건'이 충족된 지역신문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기준으로, 기금의 우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선 지원 기준'을 충족해야 함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지표</th></tr>
<tr><td rowspan="5">3-2. 해당 법 위반 여부</td><td>①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td><td rowspan="11">기준</td></tr>
<tr><td>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td></tr>
<tr><td>③ 「형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td></tr>
<tr><td>④ 「변호사법」</td></tr>
<tr><td>⑤ 「직업안정법」</td></tr>
<tr><td colspan="2">「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를 위반한 행위</td></tr>
<tr><td colspan="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또는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을 위반한 행위</td></tr>
<tr><td colspan="2">「형법」
제283조제1항(협박),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제1항 및 제284조의 죄만 해당한다), 제286조(미수범)(제283조제1항, 제284조 및 제285조의 죄만 해당한다), 제347조(사기), 제349조(부당이득), 제350조(공갈), 제351조(상습범)(제347조·제349조 및 제350조의 죄만 해당한다), 제352조(미수범)(제347조·제350조 및 제351조의 죄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7조(배임수증재), 제359조(미수범)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td></tr>
<tr><td colspan="2">「변호사법」
제109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td></tr>
<tr><td colspan="2">「직업안정법」
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행위</td></tr>
<tr><td colspan="2">4. 편집자율권 보장</td></tr>
<tr><td rowspan="4">5. 4대보험의 완납</td><td>① 건강보험(질병보험)</td></tr>
<tr><td>② 국민연금보험</td></tr>
<tr><td>③ 고용보험</td></tr>
<tr><td>④ 산재보험</td></tr>
</table>

[공통] 3-2. 기준일(우선지원대상사 공모 공고일) 1년 이전부터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 밖의 임원이 시행령 제1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 대상자의 범위는 지원신청 및 처벌 당시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 밖의 임원임
- 대상자의 범위에서 '그 밖의 임원'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된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을 지칭함
- 소속사에서 근무할 당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해고 또는 면직 처분됐다 하더라도 면책되지 아니함
-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범법행위를 저지를 당시 소속해 있었던 신문사와 선고 당시 소속해 있었던 신문사 모두를 포함함
- 범법사실을 숨기기 위해 해당자의 명단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우선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이후 적발되었을 경우 지원금 회수는 물론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음(법 제20조(벌칙 등))

○ **세부 평가표**

평 가 항 목	세 부 내 용
3-2. 해당 법 위반 여부	3-2. 기준일(우선지원대상사 공모 공고일) 1년 이전부터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 밖의 임원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위반 사실이 1건이라도 있을 경우 우선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 최종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을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기준 지표는 충족한 것으로 판단함

* 지배주주, 발행인·편집인·임원 이외에 직원이라 하더라도 범죄행위 자체가 지역언론의 신뢰를 손상시킨 것으로 평가될 경우 배점평가 지표의 언론 윤리 관련 평가 항목에 반영함

[공통] 4.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편집에 관한 규약을 제정·시행하는 등 편집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을 것

-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편집에 관한 규약을 제정·시행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신청사는 반드시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가 모두 기명과 함께 서명 또는 도장 등으로 양자날인하고 날인한 날짜가 확인 가능한 편집규약을 제출해야 함. 양자날인이 없거나 확인 불가능할 경우 불인정함**

<제출서류>

① 신청사는 **신청사의 편집규약을 제출할 것.**

※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가 모두 기명과 함께 서명 또는 양자날인할 것. 이때, 날인한 날짜가 확인 가능해야 함.

1. '편집종사자의 대표'는 편집국장을 제외한 편집종사자(편집국 기자)들의 총의를 수렴할 수 있는 기구의 대표를 말함. 즉 편집종사자들의 총의를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노동조합, 기자협회, 혹은 노사협의회 등의 대표자를 말함

2. '동등하게 참여한다'는 양측이 자율적으로 편집자율권에 관해 협의 및 합의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 과정은 합의문이나 회의록 등의 형태로 남아 있어야 함

3. 제정된 편집규약 안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1) 편집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2) 편집의 기본적인 원칙 및 지침에 관한 사항
   3) 편집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서 양심에 반하는 취재 또는 제작에 대한 거부권에 대한 사항
   4) 편집에 있어 구성원 간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의 조정에 대한 사항
   5) 편집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편집규약의 운용 제도와 관련된 사항

4. '편집자율권'이라 함은 편집규약이 실효성 있게 운용되는 것을 말하며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편집자율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 **세부 평가표**

평 가 항 목	세 부 내 용
4. 편집자율권 보장	4. 편집규약을 갖추고 있습니까?

* 편집자율권을 보장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우선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공통] 5. 기준일(우선지원대상사 공모 공고일) 1년 이전부터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또는 질병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미납액이 없을 것

- 기금 지원을 신청할 당시 신청사의 모든 종사자에 대해 건강보험(또는 질병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어야 하며, 지난 1년 동안 보험료의 미납액이 없어야 함.

- 신청사는 보안 설정(비밀번호) 해제한 '2026년도 4대보험완납증명서'를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기준일(2027 우선지원대상사 공모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함
- 상기의 경우 보안 설정 해제가 어려울 경우 출력한 뒤 스캔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장함

<제출서류>

① 신청사는 **신청사의 2026년도 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제출할 것.**

※ 보안 설정(비밀번호)을 해제한 PDF 파일을 제출해야 하며, 기준일(2027 우선지원대상사 공모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함. 이때, 파일확장자 PME일 경우 문서 확인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파일확장자를 확인 후 PDF 파일로 제출할 것.

○ **세부 평가표**

평 가 항 목	세 부 내 용
5. 4대보험의 완납	5. 기준일(우선지원대상사 공모 공고일) 1년 이전부터 4대보험의 보험료는 완납했습니까?

* 4대보험에 대한 미납이 있는 경우 우선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2.3 배점평가 기준

○ 필수 요건과 우선 지원 기준을 충족한 신청인의 경우, 각각 일간지와 주간지의 평가항목에 따라 각 항목별로 세부심사를 하여 평가 점수를 부여함

[공통] 6. 소유 지분 분산 정도

-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방송법시행령' 제3조 각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를 말한다)의 주식소유 비율 정도를 평가함
- 최대주주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소유한 법인 및 그 계열사 또는 최대주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개인의 경우도 관련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함. 따라서 신청사는 다음 3개의 증빙자료 및 붙임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함
- 최대주주는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지배주주 본인(00)'을 기준으로 판단함.
- 반드시 ①붙임자료 작성양식 **'[공통1] 주식보유명세서', ②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③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3개의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함**. 이외의 자료만 제출하거나(예시: 주주명부 등), 3개의 증빙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할 경우 자료 미제출로 간주함

<제출서류>

① 붙임자료 작성양식 **'[공통1] 주식보유명세서'**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말 주식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②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것.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2027 우선지원대상사 공고일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세무서 신고용) 받아서 제출해야 함.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명부를 제출할 것.**

③ 또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할 것. 이때,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임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부** 확인 가능해야 함.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0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4. 9. 17., 2006. 3. 10., 2010. 1. 26., 2016. 5. 27., 2021. 12. 28.>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나.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임원
   다.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 및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2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 나목 · 다목 및 동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본인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개인의 의사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는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 3. 10., 2008. 2. 29., 2016. 5. 27., 2025. 10. 1.>

1. 개인인 경우
   본인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거나 사용인인 자
2. 법인인 경우
   본인과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있는 자

③제1항의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 · 감사 · 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4. 9. 17., 2006. 3. 10.>

④제1항의 규정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 9. 17., 2006. 3. 10.,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2.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당해 법인과 자금 · 자산 · 상품 · 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당해 법인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당해 법인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⑤ 삭제 <2016. 5. 27.>

○ 세부 평가표

평 가 항 목	세 부 내 용
6. 소유지분 분산 정도	6. 최대주주의 주식 소유 비율은 얼마입니까?

[공통] 7. 매출규모, 부채 등 경영건전성 정도

- 신청사의 경영 건전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신청사는 국세청에서 발행한 표준재무제표증명(2025년 귀속)을 제출해야 함. 반드시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된 표준재무제표와 동일함'을 증명하는 2025년 귀속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그 외의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 경영 건전성 평가는 법 제16조(기금의 지원 등)제2항의 "전년도 경영실적, 재무 상태 등" 규정과 시행령 '별표 배점평가 기준' 제1호나목에 근거한 것임
-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매출규모, 당기순이익에 대한 평가임

<제출서류>

① 신청사는 **신청사의 2025년도 귀속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제출할 것.**

※ 관할 세무서장(국세청 홈택스)이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에 한함.

○ 세부 평가표

평 가 항 목	세 부 내 용
7. 경영건전성 정도	7-1. 전년도 부채 비율은 얼마입니까? (부채비율 = 부채 총액 ÷ 자기자본 총액)
	7-2. 전년도 유동 비율은 얼마입니까?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7-3. 전년도 매출 규모는 얼마입니까?
	7-4. 전년도 당기순이익은 얼마입니까?

[공통] 8. 위원회·재단 주관 조사·연구, 연수사업 등의 참여 정도

- **운용 실적 또는 사례는 2026년도에 실시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함**
- 위원회 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관한 연수·교육사업, 컨퍼런스 등에 대한 참여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신청사가 2026년에 전문연수 및 사별연수 참여 횟수, 컨퍼런스 참여 정도, 그리고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함
- 위원회 자료를 통해 평가하므로 신청사는 8-1, 8-2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 없음
- 단, 일간지는 '8-3 교육훈련 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신문사가 자체적으로 교육훈련 제도를 갖추고 실제 시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제출서류 - 일간지에 한함>

① 신청사는 **붙임자료 작성양식 '[일간2] 자체교육 실시내역'을 제출할 것.**

② 위 ①과 관련하여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할 것.

※ 증빙자료에는 일시, 주제, 참석자, 내용, 현장사진 등을 포함하여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진 제출시 2026년도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이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함. 이때, 교육 인정 사항은 아래 표를 확인할 것.

구분	내용
교육 인정 사항	① '8-3 교육훈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실적 및 증빙자료로 회사가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국 단위 이상에서 진행한 교육만 인정함 ② 단, 시청각 및 동영상 교육 등 외부 교육 자료를 활용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 기록 및 구입내역 등을 첨부하면 인정함
교육 불인정 사항 **(제출하지 말 것)**	'8-3 교육훈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실적 및 증빙자료로 다음의 경우는 불인정하므로 제출하지 말 것 ① 다른 평가 항목의 교육 증빙자료와 중복되는 경우(예시: 9. 제작·취재·판매·광고 등 관련 윤리자율강령 준수도 증빙 등)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하는 전문연수 및 사별연수(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에 대한 교육 ③ 신청사 자체 포럼 등 사내 행사, 신청사 아카데미 프로그램 ④ 회사 내부 직원에 의한 사내교육 ⑤ 법정의무교육(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 교육, 소방안전 교육,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교육,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 복지지원 신고 의무자 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일체) ⑥ 이외 직원의 역량 강화와 무관한 연수·교육은 불인정함

○ **세부 평가표**

평 가 항 목	세 부 내 용
8. 위원회·재단 주관 조사·연구, 연수사업 등 참여도	8-1. 2026년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에서 주관하는 지역신문 연수사업에의 참여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답변 불필요)
	8-2. 2026년도에 위원회가 주관한 컨퍼런스 등에 참여했습니까?(답변 불필요)
	8-3. 2026년 회사 차원에서 구성원의 전문성 등을 향상하기 위해 자체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있다면 어떤 교육입니까? (일간지만 적용)

[공통] 9. 신문의 제작·취재·판매·광고 등에 관한 윤리자율강령의 준수 정도

- 운용 실적 또는 사례는 2026년도에 실시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함
- 신청사가 자체적으로 노조와의 협의절차나 사내 공청회 등을 거쳐 제정한 윤리강령이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제작·취재·판매·광고 등 각 영역별로 윤리강령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따라 차등 평가함(윤리강령 운용과 관련, 윤리기구의 운영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관련 증빙 자료 미첨부시 불이익 있음)

<제출서류>

① 신청사는 9-1 문항과 관련하여 **신청사의 윤리강령을 제출할 것.**

② 신청사는 **신청사의 윤리강령 게재 사본, 사내 게시 사진 등을 제출할 것.**

③ 윤리기구의 운영 결과로 **윤리위원회 개최, 윤리 교육 실시 등의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제출할 것.**

※ 이 문항과 관련하여 신청사는 다음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함.

<유의사항>

① 윤리위원회 개최 증빙자료는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사진 등이 포함된 회의록 등만 인정함

② 윤리 교육 증빙자료는 교육명, 강사, 일시, 참석자, 교육 내용, 사진 등이 포함된 윤리 교육 일지 등만 인정함

③ 증빙자료는 실제 윤리위원회 개최와 윤리 교육 실시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하며, 이와 무관한 증빙 자료 및 상기 '일간 8-3 항목 자체연수교육'을 포함하여 다른 평가 항목과 중복되는 운영실적(또는 사례) 및 증빙자료는 모두 불인정함

④ 사진 제출 시, 사진상으로 2026년도 윤리기구의 운영결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이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함

- **9-2 문항**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선거기사심의 포함),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작·취재·판매·광고 등 윤리위반과 관련해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지에 따라 차등 평가함
- **9-3 문항**은 지배주주나 임원이 광고관련 윤리위반, 보도관련 윤리위반, 판매관련 윤리위반 등으로 물의를 빚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지배주주나 임원이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언론윤리에 어긋나는 사항과 관련된 경우,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관련 사실이 있으면 평가에 반영함. 아울러 지배주주, 발행인·편집인·임원 이외에 직원이라 하더라도 범죄행위 자체가 지역 언론의 신뢰를 손상시킨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평가에 반영함. (예시: 형사소추, 금품향응 수수 및 접대, 사적 이익을 위한 행위나 보도, 광고수주를 위한 행위나 보도 등)
- **9-4 문항**은 편집보도제작과 관련하여 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에 반영함. **독자권익위원회 등 독자들이 편집·보도에 참여하는 제도만 인정하며** 고충처리위원회와 옴부즈맨은 제외함. 이 항목과 관련하여 신청사는 다음 2개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제출서류>

① 독자권익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신청사는 **2026년 독자권익위원회 명단을 반드시 제출**할 것

② 운용실적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2026년 독자권익위원회 개최 보도지면(PDF 파일) 등을 반드시 제출**할 것

※ 독자권익위원회란 언론사가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구를 말하며 이와 무관한 증빙자료는 불인정함

- **9-5 문항**은 일간지에 한하며, 편집 지면 제작과 관련하여 기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에 반영함. 이 항목과 관련하여 신청사는 다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 - 일간지에 한함>

① 신청사는 **신문사 기자협회 지부가 있을 경우**,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② 신청사는 **편집위원회 또는 지면개선위원회, 공정보도위원회 등을 운영할 경우,** 명단과 운영규정을 모두 제출할 것

③ 위 ①, ②와 관련하여 신문사 기자협회 지부, 언론노조 지부, 편집위원회, 지면개선위원회 등의 **운용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사진 등 포함), **보도지면(PDF 파일)** 등을 제출할 것

○ 세부 평가표

평 가 항 목	세 부 내 용
9. 제작·취재·판매·광고 등 관련 윤리자율강령 준수도	9-1. 제작·취재·판매·광고 등의 분야에는 윤리강령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윤리강령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9-2.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선거기사심의 포함),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작·취재·판매·광고 등 윤리위반과 관련해 지적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변 불필요)
	9-3. 기준일(우선지원대상사 공모 공고일) 1년 이전부터 기준일까지 임원이나 지배주주가 언론윤리 위반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가 있습니까?
	9-4. 독자들이 편집·보도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독자권익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례는 무엇입니까?
	9-5. 편집 지면 제작과 관련해 기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 있습니까? (일간지만 적용)

[공통] 10. 지방자치단체가 홍보를 목적으로 지역신문을 구매하여 주민에게 배포하는 행위에 응하여 지역신문을 판매하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성 계도지 여부 및 판매부수에 따라 평가를 차등함

○ 세부 평가표

평 가 항 목	세 부 내 용
10. 지방자치단체 홍보성 계도지 여부	10.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성 계도지가 있습니까? (답변 불필요)

[공통] 11. 중장기 발전계획 및 지원금 사용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및 효과성

- 이 항목은 신청사의 우수성과, 역량 및 향후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임
- 상기의 내용 중 '우수성과'란 신청사의 2026년 사업 성과 및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업의 우수성과를 의미하며 신청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거하여 심사함
- 11-1 문항과 관련하여 신청사는 다음 2개의 붙임자료 및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할 것.

- 신청사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 계획기간 내 달성하고자 하는 핵심성과지표(KPI)를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목표치로 설정하여 제시해야 함(예시: 기획·심층보도 건수, 자체 취재기사 비율, 기자 1인당 연간 교육 시간, 디지털 콘텐츠 제작 비율, 온라인 월간 순방문자 수 등).

<제출서류>

① 붙임자료 **'[공통2] 중장기 발전계획서'**

② **중장기 발전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요시, 압축파일로 제출)

- 11-2 문항과 관련하여 신청사는 다음 3개의 붙임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제출서류>

① 붙임자료 **'[공통3] 지원금 사용계획서'**

② 붙임자료 **'[공통4] 취재 및 편집인력 현황'** (임원 및 외부인력 제외)

③ **지원금 사용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압축파일로 제출)

※위 ②와 관련하여 신청사의 취재편집인력 명부가 있을 경우에는 함께 제출할 것

- **11-3 문항**의 기획취재지원 및 공동주제심층보도지원 사업 수행실적은 2026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수행실적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하여 2026년에 하단의 수상 실적 인정기관에서 수상한 실적을 평가에 반영함. 따라서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2026년에 하단의 수상 실적 인정 기관에 해당하는 상을 수상했을 경우에만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제출서류>

① 붙임자료 작성양식 '**[공통5] 기획취재지원 및 공동주제심층보도지원 사업 수상실적**'을 작성하고 수상 실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할 것

※ 제출하지 않는 경우 수상실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유의사항>

11-3 문항의 수상 실적은 본 공고문에 적시한 기관의 수상만 인정하며 이때 감사장, 공로상, 유공자 포상 등 지역신문발전기금 기획취재 및 공동주제심층보도지원 수행실적과 무관한 수상과 수상 실적 인정 기관 이외의 자료 제출 시 모두 불인정함

<수상 실적 인정 기관>

한국기자협회(이달의 기자상, 한국기자상, 인권보도상, 통일언론상), 한국기자협회 지회(올해의 기자상),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상), 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여성기자상), 관훈클럽(관훈언론상),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대한민국 언론대상), 한국편집기자협회(한국편집상, 이달의 편집상), 한국사진기자협회(이달의 보도사진상), 국가인권위원회(인권보도상), 한국과학기자협회(과학취재상),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성평등미디어상),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언론상), 일경언론재단(일경언론상)

- **11-4 문항**은 2026년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은 신청사만 해당되며 2026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보조금 집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임

○ **세부 평가표**

평 가 항 목	세 부 내 용
11. 중장기 발전계획 및 지원금 사용계획	11-1. 귀 신청사의 향후 중장기 발전계획을 기술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붙임서류 작성양식 참조)
	11-2. 귀 신청사의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금 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2026년의 주요 성과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붙임서류 작성양식 참조)
	11-3. 2026년도 기획취재지원 사업 및 공동주제심층보도지원 사업의 수행실적은 어떠합니까? (수상실적 없을 시 답변 불필요)
	11-4. 2026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보조금 집행실적은 어떠합니까? (답변 불필요)

[공통] 12. 조세 체납 여부

- 기금 지원을 신청할 당시 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제,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와 지방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의 미납액이 없는 경우

<제출서류>

① 신청사는 신청사의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모두 제출할 것.

※ '지난 1년 동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 우선지원대상사 신청서 접수일까지 해당하며, 기준일(2027 우선지원대상사 공모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함.

○ **세부 평가표**

평 가 항 목	세 부 내 용
12. 조세체납 여부	12. 지난 1년 동안 국세 및 지방세의 미납액이 있습니까?

[공통] 13. 종사자 임금체불정도

- 건전한 윤리경영의 실천과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조건 확보 노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불법적인 임금 체불 발생 여부, 법정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임.

- **13 항목**과 관련하여 붙임자료 및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급여 지급일자 기입란에 당월 및 익월을 정확하게 명기할 것. 예를 들어 당월 급여를 익월 10일에 입금할 경우 '10일'만 기재하지 말고 '익월 10일'이라고 표기해야 임금 체불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당월과 익월 둘 중에 하나만 기재 가능하며 날짜만 표기하거나 '매월'로 기재하지 말 것
- 13-1 **문항**과 관련하여 신청사는 다음의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

① 신청사는 급여지급대장, 은행 이체증을 모두 제출할 것. 급여지급대장과 은행이체증은 2026년 3월, 4월의 2개월분을 제출할 것

② 위 ①과 관련하여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또는 급여 이체일과 은행 이체증 날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사는 붙임자료 작성양식 **'[공통6] 임금체불소명'**을 작성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할 것

③ 위 ①, ②의 자료는 신청사의 정규직과 계약직 등 상시 근로자 전원이 해당함. 임원, 프리랜서 등 비상근 직원,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인재인턴프로그램 지원 대상인 인턴 등은 증빙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함

- **13-2 문항**은 신청사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 문항과 관련하여 신청사는 다음의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

① **붙임자료 작성양식 '[공통7] 임금 산정내역'**에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는 모든 직원에 대한 '월 근로시간', '월 급여', '급여지급일' '실제 급여이체일', '환산 기준시간 적용 최저시급 미달 시 사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할 것. 2026년 3월 및 4월의 2개월분을 작성할 것

② **이때 신청사의 정규직과 계약직 등 상시 근로자 전체를 작성 대상에 포함함**. 임원, 프리랜서 등 비상근 직원,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인재인턴프로그램 지원 대상인 인턴 등은 붙임자료 작성 대상에서 제외함

③ 또한 수습기간, 직원 및 회사의 특정 사유(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병가, 장기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등으로 인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공통7] 임금 산정내역' 비고란**에 그에 대한 사유를 적시하고 소명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 - 47호)>를 적용하여 평가함

1. 최저임금액

- 결정단위 : (시간급) 10,320원, (일급) 시간급 × 1일 근로시간, (주급) 시간급 × 1일 근로시간 × 1주 내 근로일 (또는 시간급 × 1주 근로시간)
- 월 환산액 2,156,8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예: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성 임금 중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 (예: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산입**

3.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 통화 이외 형태(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또는 소정의 근로일) 외에 지급되는 임금

①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②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4.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근로자 기준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함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 **세부 평가표**

평 가 항 목	세 부 내 용
13. 종사자 임금체불정도	13-1. 기준일(우선지원대상사 공모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원에게 임금을 체불한 적이 있습니까?
	13-2. 직원 급여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공통] 14. 총 게재 기사 중 지역 관련 기사의 비율

- **14-1** 문항은 총 게재 기사 중 지역 관련 기사의 비율을 평가함.
- 지역 관련 기사라 함은 해당 지역(신문 배포 지역)에 관련된 기사를 말함

<지역 관련 기사 예시>

발행 권역 내에 있는 사람이나 사건 및 사물 등에 관한 기사, 발행 권역 내에 거주하는 이는 아니지만 연고가 있는 이에 관한 기사, 발행 권역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지역민의 반응 또는 비평기사

- 지면에 실린 전체 기사 대비 지역 관련 기사의 비율을 평가함
- 위원회가 연중 실시한 지역신문 모니터링 결과와 신문사가 제출한 지면신문 PDF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14-2** 문항은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과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취재·분석을 바탕으로 원인과 배경,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 심층기획보도 실적을 평가함. 단순 사실 전달이나 홍보성 기사, 관련 기사의 단순 나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최소 3회 이상 연재된 심층기획보도 시리즈의 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신청사는 붙임자료 작성 양식에 따라 해당 실적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지면 PDF)를 제출해야 함. 이때, 시리즈별로 1건으로 산정하며,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기사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제출서류>

① 신청사가 최소 3회 이상 연재한 심층기획보도 목록을 **'[공통8] 심층기획보도 목록'**에 작성하여 제출할 것.

② 위 ①의 목록에 관한 증빙자료(보도지면 PDF)를 제출할 것.

※ 이때, 시리즈별로 1건으로 산정하며,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기사는 목록에 작성하지 말 것.

<심층기획보도 예시>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이나 문제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취재와 분석을 통해 문제의 원인과 배경,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 보도를 의미함. 단순한 사실 전달, 행사·사업·정책 등의 홍보, 관련 기사의 단순 나열은 제외하며, 동일한 주제에 대해 최소 3회 이상 연재한 보도물의 집합을 1건으로 산정함.

○ **세부 평가표**

평 가 항 목	세 부 내 용
14. 총 게재 기사 중 지역 관련 기사 비율	14-1. 전체 기사 대비 지역 관련 기사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답변 불필요)
	14-2. 기준일로부터 최근 1년간 3회 이상 연재한 심층기획보도 시리즈는 총 몇 건입니까?

[일간지] 15. 인사관리 및 기자 채용의 투명성·공정성

- 일간신문에만 적용되는 기준임
- 운용 실적 또는 사례는 2026년도에 실시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며 대외비 등의 사유로 확인이 어려운 증빙자료를 제출할 시 불인정함

- 신청사의 인사관리 및 채용에 관한 투명성·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임. 인사 규정 마련 및 운영, 인사위원회 제도 마련 및 운영, 노사협의 제도 마련 및 운영, (주재기자가 있을 경우) 본사와 주재기자 간의 형평성 등을 평가함
- **15-1 문항**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관리와 기자 채용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음. 따라서 신청사는 다음의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

① 채용 및 임명, 승진 및 전보, 해임 및 징계 등 각종 인사 관련 규정 일체를 PDF 파일로 제출할 것. 이때 인사 관련 규정의 전반적인 내용 파악이 어려울 경우 불인정함 (예시: 대외비 처리, 인사 관련 규정 중 특정 내용만 제출 등)

② 2026년도 인사 관리 운용(인사 관련 회의, 인사 관련 위원회 개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을 제출할 것. 회의록은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안건, 회의 내용, 참석자 서명 등이 포함되어 실제 회의 개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함

③ 15-1 문항과 관련하여 회의록이 없을 경우, 위 ②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

- **15-2 문항**은 사내 노조대표나 사원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지는지를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음. 따라서 신청사는 다음의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

① 노조대표나 사원대표의 제도적 참여를 명시한 규정 일체를 PDF 파일로 제출할 것

② 2026년도에 노조 대표나 사원 대표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을 제출할 것. 회의록은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안건, 회의 내용, 참석자 서명 등이 포함되어 실제 회의 개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함

③ 15-2 문항과 관련하여 회의록이 없을 경우, 위 ②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

④ 15-1 문항과 중복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말 것. 단, 15-1의 증빙자료에 15-2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만 별도로 제출할 것

○ **세부 평가표**

평 가 항 목	세 부 내 용
[일간지만 적용] 15. 인사관리 및 기자 채용의 공정성·투명성	15-1. 인사관리 및 채용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15-2. 사내에 노조대표나 사원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참여는 이뤄지고 있습니까?

[주간지] 15. 총 게재 기사 중 자체 생산 기사의 비율

- 주간신문에만 적용되는 기준임
- 자체생산 기사란 언론사가 직접 기획·취재·분석해 독자에게 제공하는 독립적이고 독창적인 기사를 의미함
- 신문사에서 제출한 지면신문 PDF와 위원회가 연중 실시한 지역신문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세부 평가표**

평 가 항 목	세 부 내 용
[주간지만 적용] 15. 총 게재 기사 중 자체 생산 기사 비율	15. 귀 신청사에서는 기사를 자체적으로 얼마나 생산하고 있습니까? **(답변 불필요)**

[주간지] 16. 신문발행 지속 기간

- 주간신문에만 적용되는 기준임
- 신문의 발행 지속 기간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창간호 발행일 기준으로 몇 년 동안 정상 발행하였는지에 관하여 평가함

○ **세부 평가표**

평 가 항 목	세 부 내 용
[주간지만 적용] 16. 발행 지속기간	16. 신문의 지속발행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Ⅳ. 신청서 작성방법

1. 신청요령

1.1 용어의 정의

○ ‘신청사’라 함은 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한 신문사를 말하며, ‘신청사’는 관련 법률이 정하는 ‘지역신문’으로 무료신문은 대상에서 제외함

지역신문이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신문으로서 일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또는 시 · 군 · 자치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함

○ 신청 관련 서류는 위원회가 정한 ‘온라인 신청서’와 ‘붙임자료’를 말함

○ ‘우선지원대상사’라 함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금 지원을 받게 되는 신문사를 말함

1.2 신청서 제출방법

○ 신청서 및 붙임자료, 지면신문 제출 안내

- 신청사는 접수기간 동안 위원회에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관련 서류는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ln.or.kr/**)**를** 통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신청사는 예외 없이 2027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공고문에 제시한 모든 붙임자료를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붙임자료를 신청사에서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작성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그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사에 있음. 위원회는 최초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한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된 기한 이후 추가 제출은 불가함.
- 신청사는 다음 제시된 기간의 지면신문 PDF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PDF로 제출할 때 지면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불인정함. 신문 PDF의 용량이 커서 업로드가 불가능한 경우 신문 PDF 파일에 한하여 이메일 제출 가능(lnst@kpf.or.kr)

제 시 된 기 간	제 출 방 법
① 일간지 : ’26년 3월 둘째 주(일주일 기준) ② 주간지 : ’26년 3월(한 달 기준)	발행된 지면신문은 pdf로 제출하되, pdf가 없는 경우 우편제출(4부)
일/주간지 공통 ① 2025년 11월 24일 이후 첫 발행신문의 발행호수가 나온 지면 PDF ② 2026년 11월 24일(2027 우선지원대상사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발행신문의 발행호수가 나온 지면 PDF 제출	지면신문은 pdf로 제출하되, pdf가 없는 경우 우편제출(2부)

- 우편 제출처 : (우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12층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역언론팀(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

1.3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공고 관련 문의

문 의 사 항		연락처
신청서 작성 관련	공고문 내용, 작성 방법, 증빙자료 등	(위원회) 02-2001-7692, 7693, 7694
온라인 접수 방법	신청서 양식, 자료 제출 및 접수 등	(지역언론팀) 02-2001-7823

2. 신청인의 의무

○ **신의성실의 의무**

- 지원 대상사는 지원 사업의 취지와 조건에 맞게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음

○ **자료보존의 의무**

- 지원 대상사는 제출증빙서류 등 관련 자료를 최소한 3년간 보존해야 함

○ **협정이행의 의무**

- 지원 대상사는 지원조건에 규정된 사항과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음

○ **과실책임**

- 지원 대상사의 과실로 사업내용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지원 대상사는 위원회의 청구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함

○ **허위신청 금지**

- 신청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 지원금의 전부와 지원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 등을 환수 조치할 수 있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법 제20조 벌칙 등 참조)

Ⅴ. 자주 묻는 질문

Q. 증빙자료 제출 건수는 정해져 있나요?

A. 공고문 및 붙임자료 양식에 증빙자료 건수를 명시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이 없을 경우는 최대 10건 이내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Q. 증빙자료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A. 2건 이상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하나의 압축 파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이때 파일명 등으로 어떤 항목의 증빙자료인지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Q. [공통2_일반] 조직 및 인력현황의 작성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Q. '1. 1년 이상 정상발행' 항목과 관련하여 신문 정기간행물등록증 대신 사업자등록증 등 다른 서류를 제출해도 되나요?

A. 안됩니다. 반드시 정해진 제호와 주기로 신문을 발행하려는 자가 관할 관청에 등록을 완료한 후 발급받는 공식 증명서인 정기간행물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Q. '1. 1년 이상 정상발행' 항목과 관련하여 발행호수 지면 PDF는 발행호수가 나온 지면만 제출하면 되나요?

A. 네, 해당 항목과 관련해서 ① 2025년 11월 24일 이후 첫 발행신문의 발행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지면 PDF ② 2026년 11월 24일(2027 우선지원대상사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발행신문의 발행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지면 PDF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2. 광고 비중 50% 이하' 항목과 관련하여 붙임자료 광고비율계산내역서의 양식 내용보다 적게 혹은 많게 발행한 경우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A. 신청사의 상황에 맞게 셀을 가감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Q. '5. 4대 보험 가입 및 완납' 항목과 관련하여 4대 보험 가입 직원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A. 신청사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기준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https://www.4insure.or.kr)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장 명의의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면 신청사의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6. 소유지분 분산 정도' 항목과 관련하여 2026년 신고 기간 기준으로 주주의 변동이 없어서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연도와 관계 없이 가장 최근에 신고한 자료를 기준일(2027 우선지원대상 선정 공고일) 이후에 홈택스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주명부를 대신 제출하거나 수기로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홈택스 발급일이 확인 가능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8-3 문항의 자체교육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은 무엇인가요?

A. ① 다른 평가 항목의 교육 증빙자료와 중복되는 경우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하는 전문연수 및 사별연수(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에 대한 교육, ③ 신청사 자체 포럼 등 사내 행사, 신청사 아카데미 프로그램 ④ 회사 내부 직원에 의한 사내교육, ⑤ 법정의무교육(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 교육, 소방안전 교육,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교육,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 복지지원 신고 의무자 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일체) ⑥ 이외 직원의 역량 강화와 무관한 연수·교육은 모두 불인정하며 이를 무시하고 불인정 항목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사에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공고문의 해당 문항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8-3 문항과 관련하여 직원 개인이 외부 교육에 다녀온 것도 해당되나요?

A.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체교육 해당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9-1 문항의 윤리강령 및 윤리교육 증빙자료와 관련하여 윤리교육 보도지면은 있지만 날짜가 없습니다. 결과보고서로 갈음해도 되나요?

A. 발행일자가 나온 보도지면을 첨부하고 결과보고서도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교육 일자를 가늠할 수 없거나, '8. 연수사업 컨퍼런스 등 참여 정도' 항목 등 타 항목 증빙자료와 중복될 경우 불인정합니다

Q. 9-4 문항의 독자권익위원회 관련 '독자위원회'라는 명칭도 인정되나요?

A. 독자권익위원회라는 명칭은 예시이며, 신문사가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구는 고충처리위원회와 옴부즈맨을 제외하고 모두 해당됩니다. 단, 신문사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구 없이 단순 구독자와의 만남 및 일시적인 구독자 의견 청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11-1 문항의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핵심성과지표(KPI)는 무엇이고 어떤 예시가 있나요?

A. 핵심성과지표(KPI)는 중장기 발전계획의 목표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자체 기획·심층보도 건수, 자체 취재기사 비율, 기자 1인당 연간 교육시간, 온라인 월간 순방문자 수, 디지털 콘텐츠 제작 비율, 유료 구독자 수, 매출액 증가율 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사는 신문사의 특성과 발전목표를 고려하여 위 예시 이외에도 적절한 지표를 선정하고, 계획기간 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면 됩니다.

Q. 11-2 문항의 지원금 사용계획에서 우수성과를 작성할 때 꼭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은 내용만 기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2026년 우선지원대상사인 경우 기금 지원 사업 수행 실적뿐만 아니라, 신청사가 자체적으로 기획·추진하여 달성한 성과 등 귀사의 경쟁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면 모두 작성 가능합니다

Q. 11-2 문항의 지원금 사용계획에서 2026년 우선지원대상사가 아닌 경우 우수성과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2026년 우선지원대상사가 아닌 경우 신청사가 자체적으로 투입한 재원과 노력을 통해 창출한 성과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Q. 11-3 문항의 지역신문발전기금 기획취재 및 공동주제심층보도 사업 수상실적과 관련하여 2025년도에 지발기금 지원 받은 사업으로 2026년에 수상 실적 인정기관에서 수상했는데 이런 경우도 성과로 기재할 수 있나요?

A. 네, 기재 가능합니다. 수상 실적은 해당 사업의 지원 연도가 아닌 실제 수상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과거의 지역신문발전기금 기획취재 및 공동주제심층보도 지원사업의 결과물이라도 2026년도에 수상하였다면 실적으로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Q. '13-1. 임금체불, 13-2 최저임금'의 작성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사의 정규직과 계약직 등 상시 근로자 전원이 작성 대상에 해당하며 임원, 프리랜서 등 비상근 직원,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인재인턴프로그램 지원대상인 인턴 등은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Q. 13-2 문항의 '임금 산정내역' 붙임자료 작성양식에서 월 근로시간과 월 급여 작성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통상(또는 전일제) 근로자(1일 8시간, 주 40시간)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 육아휴직자, 중도 입·퇴사자, 병가 등 근무 조건, 형태가 다르거나 근무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근무 시간 및 지급액에 맞게 작성해 주십시오. 아울러 이때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 일간지 15. 인사관리 및 기자 채용의 공정성·투명성은 인사 규정만 제출하면 되나요?

A. 공고문에 제시한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인사 규정 일체가 아닌 채용, 승진 등 특정 내용만 제출하거나 대외비 처리 등으로 규정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불인정합니다.

Q. 일간지 15. 인사관리 및 기자 채용의 공정성·투명성에서 15-1 문항과 15-2 문항에 동일한 증빙자료를 제출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15-1 문항과 중복되는 자료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예외적으로 15-1의 증빙자료에 15-2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만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일간지 15. 인사관리 및 기자 채용의 공정성·투명성 관련해서 2026년도에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면 어떤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나요?

A. 공고문 내용을 확인하시고 ‘15-1 문항의 제출자료’ 및 ‘15-2 문항의 제출자료’에 제시한 증빙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